

임시 외국인 근로자 보호받는 귀하의 권리

캐나다에서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권리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캐나다인 및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귀하의 권리

고용주의 의무:

- ▶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근무 첫날 또는 그 이전에 서명한 고용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 ▶ 고용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계약의 일부로 초과 근무를 포함하는 경우, 초과 근무도 포함됩니다.
- ▶ 보복과 학대가 없는 직장이 되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 ▶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의 고용 및 채용 기준을 따릅니다.
- ▶ 주 또는 준주 건강 보험을 위한 자격이 될 때까지 귀하를 위해 응급 의료를 보장하는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의료 서비스 이용 섹션에서 예외 사항 참고).
- ▶ 직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아프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용주에게 금지하는 사항:

- ▶ 고용 계약서에서 승인하지 않은 불안정한 작업이나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 고용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과 근무를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 ▶ 학대, 불안정한 작업, 부적절한 숙소를 신고하거나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여권이나 취업 허가증을 수거해 갈 수 없습니다.
- ▶ 캐나다에서 추방하거나 이민 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귀하를 고용하기 위해 지불한 채용 관련 수수료를 귀하가 변상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고용 계약

근무 첫날 또는 그 이전에 고용주는 고용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 선택한 공식 언어인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 및 귀하의 고용주 모두 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에서는 고용 제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직업,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언급해야 합니다.

▶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고용주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의사와 상담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또는 준주 의료 보험

귀하가 근무하는 주 또는 준주의 의료 보험 제도에 따라 무료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처음 도착하면 주 또는 준주 의료 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귀하의 주 또는 준주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료 보험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민간 의료 보험

귀하가 근무 중인 주 또는 준주의 의료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면, 고용주가 응급 의료에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이 민간 의료 보험에 대한 어떤 비용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멕시코** 또는 **카리브해**에서 계절 농업 종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캐나다 간의 계약에 의료 보험 제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사항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상사나 고용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최대한 신속히 의료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를 들면, 고용주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예: 의사, 간호사 또는 약사)에게 갈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 ▶ 응급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가 있도록 보장합니다.
- ▶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는 교통편을 지원합니다.

고용주에게는 병원, 진료소,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는 교통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간 의료 보험 섹션에서 계절 농업 근로자에 대한 예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고용주의 입회 없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고용주는 귀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당신을 해고하거나 지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신고되는 모든 위험을 조사해야 합니다. 귀하에게는 귀하와 고용주가 다음 사항에 동의할 때까지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위험이 제거됩니다.
- ▶ 적절한 장비와 교육을 받습니다.
- ▶ 문제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의무:

- ▶ 고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장비나 기계를 안전하게 작동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하도록 교육합니다.
- ▶ 직업에서 살충제/화학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용주는 귀하의 급여에서 이 장비 및 교육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다수 주와 준주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 보상 혜택(손실된 임금을 만회하기 위한 지급)을 제공합니다.

- ▶ 고용주가 근로자의 산재 보상 청구를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 ▶ 일부 주 및 준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장 안전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귀하의 급여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가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 또는 준주의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사무소에 상황을 신고하십시오(직장 건강 또는 안전 문제 신고 섹션 참고).

▶ 학대가 없는 직장

고용주는 학대가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예: 관리자)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재정적으로 귀하를 학대할 수 없습니다.

학대에는 고용주의 법률 불이행을 신고하는 것에 대한 강등 조치 또는 위협, 징계 조치 또는 해고와 같은 보복이 포함됩니다. 귀하를 두렵게 하거나, 통제하거나, 고립시키는 모든 행동은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의 몇 가지 예:

- ▶ 신체적 상해,
- ▶ 위협, 모욕,
- ▶ 귀하의 건강에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강요,
- ▶ 원치 않는 성적 접촉,
- ▶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다음 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성적 호의를 제공하라고 요구,
- ▶ 갈 수 있는 곳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제한,
- ▶ 귀하에게서 절취,
- ▶ 귀하가 받아야 할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가는 행위,
- ▶ 여권, 취업 허가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압수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 ▶ 사기를 강요하는 행위,
- ▶ 근무 조건이나 학대에 대해 불평하거나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또는 징계,
- ▶ 임신하는 경우 해고하거나, 캐나다를 떠나도록 하거나 떠나라고 위협하거나 낙태를 강요하는 행위.

학대 상황을 신고하려면 서비스 캐나다 기밀 신고처 1-866-602-9448로 연락하십시오. **즉시 도움이 필요하면 9-1-1 또는 지역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 직장을 잃으면

고용주는 해고하기 전에 합당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귀하의 근무 기간과 귀하가 일하고 있는 주 또는 준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실직하거나 학대를 받아 이직한다면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정보를 알아보려면 [고용 보험 일반 혜택](#)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고용주 변경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허가증은 현재의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새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귀하를 고용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 고용주는 유효한 노동 시장 영향 평가 (**évaluation de l'impact sur le marché du travail, EIMT**)를 보유해야 합니다.

계절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Programme des travailleurs agricoles saisonniers, PTAS)의 농업 노동자인 경우 새로운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절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 노동자인지 확인하려면 취업 허가증을 보십시오. "Employeur MEX/CCSAWP approuvé uniquement" 문구가 하단 참고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절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 고용주 간 이전을 완료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서명한 고용 계약서를 참고하십시오.

위의 단계를 따르지 않고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 귀하는 허가 없이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캐나다를 떠나야 함).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캐나다 고용주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의 직업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고용주가 이미 긍정적인 노동 시장 영향 평가를 신청했거나 받았는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거권

▶ 저임금 및 1차 농업 분야의 노동자

귀하가 저임금 또는 1차 농업 근로자인 경우, 고용주는 합당하고, 적절하며, 경제적인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주거비와 수도 및 전기와 같은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스트림에 따라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계절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의 노동자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경우, 고용주는 적절한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숙박비를 공제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제외). 고용 계약서에는 모든 급여 공제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용하는 공제액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멕시코** 또는 **카리브해**에서 온 경우, 주택 및 유틸리티 비용은 서명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적합한 하우징

귀하의 숙소는 다음을 포함한 주/준주 및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 안전합니다(위험하지 않습니다).
- ▶ 혼잡하지 않습니다.
- ▶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기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 ▶ 작동하는 소화기 및 연기 감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 ▶ 환기가 적절히 되어야 합니다.
- ▶ 시설을 갖춘 화장실,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및 샤워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 ▶ 지속적으로 온수와 시원한 식수를 공급합니다.

귀하의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캐나다 기밀 신고처 1-866-602-9448로 전화하십시오.

도움을 받는 방법

▶ 학대 신고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귀하 또는 귀하의 지인을 학대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사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캐나다 신고처에 전화하기
1-866-602-9448.

- ▶ 이 서비스는 기밀입니다. 서비스 캐나다는 귀하의 신고 전화를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 ▶ 200개 이상의 언어 중 하나로 서비스 캐나다 상담원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 ▶ 우려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 익명으로 메시지를 남겨도 됩니다. 모든 통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캐나다에 학대를 신고하기 위해 온라인 양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 학대 또는 학대의 위험으로 인한 직업 변경

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취약 근로자를 위한 개방형 취업 허가 신청**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취업 허가는 캐나다의 거의 모든 고용주를 위해 일할 권한을 부여하여 직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의 도움 받기

▶ 브리티시 컬럼비아

- **Community Airport Newcomers Network**가 밴쿠버 국제 공항에서 귀하를 맞이하며, 정보 및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실시합니다: 604-270-0077.
- **MOSAIC**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까운 지원 조직과 귀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604-254-9626.
- **DIVERSEcity Community Resources Society**는 이주 근로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일합니다: 604-547-1240

▶ 앨버타, 서스캐처원 및 매니토바

- **캘거리 가톨릭 이민 협회(CCIS)**는 캘거리 국제 공항(YYC)에서 이주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지원 기관과 귀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888-331-1110

▶ 온타리오

- **다문화 이민자 및 지역 사회 서비스 (Polycultural Immigrant and Community Services)**가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YYZ)에서 귀하를 맞이합니다: 1-844-493-5839 교환 2266
- **TNO-The Neighbourhood Organization**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까운 지원 기관과 귀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647-296-0161
- **Workforce Windsor Essex**는 커뮤니티 조정 전략을 통해 귀하를 지원합니다: 226-774-5829

▶ 퀘벡

- **Immigrant Québec**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Qui peut vous aider?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탭에 지원 조직 목록이 있습니다.

▶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 **이민자 서비스 기관 대서양 지역 협회 (ARISA)**에서 가까운 지원 단체와 귀하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902-431-3203

▶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 **새 캐나다인 협회(ANC)**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에서 가능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1-833-316-5839 또는 1-833-31NLTFW

▶ 직장 건강 또는 안전 문제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 주 또는 준주의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 위험한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음
- ▶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음
- ▶ 일 때문에 다치거나 아픔
- ▶ 임신한 상태이고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임신 상태에 위험이 될 수 있음

주 및 준주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사무소:

- ▶ **앨버타:** 1-866-415-8690
- ▶ **브리티시 컬럼비아:** 1-888-621-7233
- ▶ **매니토바:** 1-855-957-7233
- ▶ **뉴브런즈윅:** 1-800-222-9775
- ▶ **뉴펀들랜드 및 레브라도:** 1-800-563-5471
- ▶ **노스웨스트 준주:** 1-800-661-0792
- ▶ **노바스코샤:** 1-800-952-2687
- ▶ **누나부트:** 1-877-404-4407
- ▶ **온타리오:** 1-877-202-0008
-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800-237-5049
- ▶ **퀘벡:** 1-844-838-0808
- ▶ **서스캐처원:** 1-800-567-7233
- ▶ **유콘:** 1-800-661-0443

▶ 기타 고용 문제 신고

귀하가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주 또는 준주 고용 표준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 ▶ **알버타:** 1-877-427-3731
- ▶ **브리티시 컬럼비아:** 1-833-236-3700
- ▶ **매니토바:** 1-800-821-4307
- ▶ **뉴브런즈윅:** 1-888-452-2687
- ▶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1-877-563-1063
- ▶ **노스웨스트 준주:** 1-888-700-5707
- ▶ **노바스코샤:** 1-888-315-0110
- ▶ **누나부트:** 1-877-806-8402
- ▶ **온타리오:** 1-800-531-5551
-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800-333-4362
- ▶ **퀘벡:** 1-800-265-1414
- ▶ **서스캐처원:** 1-800-667-1783
- ▶ **유콘:** 1-800-661-0408, 교환 5944

▶ 연방 규제를 받는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

캐나다의 대다수 산업은 주정부 또는 준주 정부의 규제를 받지만, 일부는 연방 정부의 규제 하에 있습니다. 연방 규제를 받는 직장인 경우 [온라인](#) 또는 1-800-641-4049로 전화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제 산업 및 작업장 목록](#)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본인이 인신매매 피해자이거나, 인신매매 활동이 의심되거나, 알고 있는 경우의 연락처:

- ▶ **캐나다 인신매매 핫라인** 1-833-900-1010
으로 전화하여 지역 사회의 지원 서비스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거나
- ▶ 서비스 캐나다의 비밀 신고 전화
1-866-602-9448로 문의하십시오.